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제도개선)

□ 민원 제목 : 연수구청 자전거 수리서비스 운영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 관련

□ 신청 원인

○ 신청인은 위 주소지에서 20년 이상 삼천리 자전거 가게를 운영 해오고 있는 자영업자이다. 그런데 연수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격 경쟁을 할 수 없어 손님 감소 및 매출 하락에 따라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민원인 가게는 구청 인근에 있어서 구청의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구청에서는 인근 자영업자와 공생을 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민간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시장 보호 지침 존재 시 이를 검토하여 적용하는 등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 해 달라는 것임.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연수구청에서는 2009. 10. 27부터 주민들에게 자전거 수리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전거 수리센터 참여자에게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구청 인근에 있는 피신청인의 자전거 가게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으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특정 요일을 제외하거나 이용 횟수 제한 시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민간 시장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수리센터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민간 시장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 시행 시 인근 자영업자와의 상담 및 의견 수렴을 통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민간시장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022.7.29. 기획재정부)을 토대로 민간경합성 점검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주민 복리를 증진하되 민간시장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하겠다는 입장임

□ 사실관계

○ 연수구청에서는 2009. 10. 27.부터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최근 5년(2020년~2024년)간 자전거 수리센터 연평균 운영 건수는 약 5,098건, 월 653건으

로 유상 및 무상건수는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2025년은 제1팀은 3월 5일부터 6월 27일까지 구청 한마음 광장에서 주 5일(월~금)일 10:00~16:00까지 운영하고 있고 제2팀은 3월 5일부터 6월 27일까지 15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으며 수리비는 부품 미사용 시 무상 수리, 부품 사용 시 공임은 무료로 부품은 원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자영업자는 경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특히 구청 한마음 광장 수리센터 인근에 위치(약100m 상거)하고 있는 신청인의 자전거 가게는 구청의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으로 인한 고객 및 매출 감소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 됨

□ 관계법령 등

-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 연수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

□ 판단 및 결론

○ 연수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수리센터는 자전거 수리에 따른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 밀착형 자전거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자전거 수리 기술을 전수 등을 통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도 최근 5개년(2020년~2024년) 연평균 5,098건, 월 평균 653건으로 만족도가 높은 주민편의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됨.

○ 위와 같은 수리센터 운영실적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자전 구청에서 운영하는 수리센터와는 가격경쟁에서 불리할 수 밖에 것이 인정되고 구청 수리센터와 인근에 있는 신청인의 가게는 고객감소 및 이에따른 매출 감소는 상당하다고 판단 됨.

○ 이에 따라 상반기 수리센터 운영이 종료(2025. 6. 27)되고 하반기 수리센터 운영 시 신청인이 요청하는 내용과 피신청인이 답변한 내용이 어느정도 부합하는 만큼, 상반기 운영계획 수립 이전에 신청인과 의견을 조율하여 민간시장의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수리센터 운영방식을 개선 할 것을 의견표명 함.

○ 상반기 수리센터 운영이 종료(2025. 6. 27)되고 하반기 수리센터 운영 시 신청인이 요청하는 내용과 피신청인이 답변하는 내용이 상당히 부합하는 만큼, 상반기 운영계획 수립 이전에 신청인과 의견을 조율하여 민간시장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수리센터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운영 할 것을 의견표명 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제도개선)

□ 민원 제목 : 보건증 수수료 차등부과에 대한 개선요청

□ 신청 원인

- 신청인의 주소지는 미추홀구이나, 연수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과 관련하여 유독 연수구만 수수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함.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연수구는 연수구에 거주하면 수수료가 3,000원이고, 비거주자에 6,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수수료에 대하여 조정요청함.

□ 사실관계

- 신청인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내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할지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가 아닌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6,000원을 부과한 것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한 사안임.

□ 관계법령 등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판단 및 결론

- 수수료란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받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부담하는 경비를 말하는데, 「행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연수구 보건소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 증명발급 수수료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2024. 10. 23)하였음.

제3조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별표]				
	증명서 발급 수수료				
	구분	종류	단위	금 액 (원)	비고
	1. 각종 증명서	마. 건강진단결과 서 (구, 보건증)	1매	6,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50%를 감액한 다.

- 이에 의하여 해당 부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일 경우 이외에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6,000원을 정당하게 부과한 사안임.
- 신청인이 지정한 바와 같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서구 등)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뿐만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3,000원 증명 발급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다만, 주민등록을 마친 거주자 이외에 영업장에 종사하는 자의 발급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공공시설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지역 재정에 기여하는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근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함.